



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
(자치행정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6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3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(2022.1.13. 시행) 제81조에서 통장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동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4조, 제5조, 제5조의 2 삭제 : 시행규칙으로 제정함으로 삭제

나. 제6조(명예반장) : 유명무실한 규정 삭제

다. 제7조의 2(비밀유지) :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사적용도 방지를 위해 신설

라.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

<p>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</p>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2. 2. 3. ~ 2022. 2. 23.(20일)
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첨부

3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관할하에”를 “관할아래”로 한다.

제4조, 제5조, 제5조의2,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수행”을 “일시적으로 수행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비밀유지) 통·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월1회로”를 “월 1회로”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개최 할”을 “개최할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시행세칙)”을 “(시행규칙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한을 받지 아니한다)

2. 출산장려를 위한 3명이상 다
자녀 가정 및 봉사활동 우수
자 우대

3.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
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
는 사람

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
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
서 동장이 위촉한다.

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
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
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
야 한다.

1. 해당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
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를
하지 아니할 때

2.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
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
거나 남용하였을 때

3. 심신장애나 질병, 해외여행
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
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
4.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
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
를 손상 하였을 때

5.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
의 형을 선고받거나 「공직선
거법」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
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

6. 통의 통·폐합 등 구역조정
이 있을 때

7.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
다고 인정될 경우

⑤ 조례에 의해 임기만료 또는
해촉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
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이 통
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
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
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
다.

제5조의2(통장추천심사위원회) ①
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
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
수 있도록 통장추천심사위원회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
·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동 단위별 비상설
기구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하
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하며, 위원은 주민자치위원, 직

<삭 제>

능단체장, 통장, 반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회의록을 작성 공개한다.

제6조(명예반장)

-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.
-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임무) ① (생략)

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·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<삭 제>

제7조(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일시적으로 수행-----

-----.

제7조의2(비밀유지) 통·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반상회) ①·② (생략)

③ 정기반상회는 월1회로하고
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
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
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
다.

제9조(통·반장회의) 동장은 월1
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
통·반장 연석회의를 개최 할
수 있다. 다만, 동장이 필요하다
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
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세칙) (생략)

제8조(반상회) ①·② (현행과 같
음)

③ ----- 월 1회-----

제9조(통·반장회의) -----

----- 개최할 -----

제12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계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상위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건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에 따라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개정건
으로 비용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신 신 재